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의 주요 내용

백영화 연구위원

2020년 9월 1일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이 예고되었음. 개정안에는 상품설명서를 보험약관 등의 이해도 평가 대상으로 규정하는 내용, 보험조사협의회 구성기관에 신용정보원을 추가하는 내용, 보험설계사가 보험사 기행위 관련 사유로 업무정지 3개월 이상 자체 징계를 받은 이력을 보험협회가 수집·관리·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 금융위원회는 2020년 9월 1일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예고하였음

- 이번 개정안은 보험약관 등의 이해도 평가 대상에 상품설명서를 포함시키고, 보험사기 관련 일부 제도를 개선하는 것을 내용으로 함

■ 보험약관 등의 이해도 평가(제7-82조)

- 상품설명서를 보험약관 등의 이해도 평가 대상으로 규정함
 - 현재는 보험약관에 대해서만 이해도 평가¹⁾를 실시하고 있지만, 보험업법 개정으로 2020년 11월 20일부터는 보험약관뿐만 아니라 '보험안내자료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도 이해도 평가 대상에 포함됨²⁾
 - 실제로 소비자는 보험상품의 안내자료를 보고 가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므로, 이해도 평가 대상에 보험안내자료도 포함시킴으로써 보험안내자료가 소비자가 알기 쉽게 작성되도록 하기 위한 취지임

1)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의 개요는 다음과 같음

- (시행) 보험개발원이 연 2회 평가 시행
- (방식) 유관기관 추천 소비자대표 6인·전문가대표 4인 평가 및 일반 소비자 평가
- (활용) 이해도 평가 결과를 홈페이지에公示하고 보험회사에 반영토록 권고
⇒ 이해도 평가 실효성 제고를 위해 평가 결과를 경영실태평가에 반영할 예정

자료: 금융위원회(2020. 8. 27), 「보험업감독규정 규제영향분석서」

2) 보험업법 제128조의4 제1항 제2호

- 위와 같은 보험업법 개정에 따라 보험안내자료³⁾ 중에서 이해도 평가 대상에 포함될 자료를 보험업 감독규정에서 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이번 개정안에서 상품설명서를 이해도 평가 대상으로 규정함
- 이해도 평가 대상의 범위 확대 시행 초기인 점과 평가 대상 확대에 따른 평가자의 업무 부담 등을 고려하여, 우선은 생명보험회사 및 손해보험회사 모두 보험계약 권유 단계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상품설명서를 이해도 평가 대상으로 하려는 것임

■ 보험조사협의회의 구성(제8-1조)

- 보험조사협의회의 구성기관에 신용정보원을 추가함
 - 보험조사협의회는 보험업법 제162조에 의한 조사 업무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 내에 둔 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 금융감독원, 보험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으로 구성된 협의회임
 - 협의회는 다음의 사람 중에서 금융위원회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⁵⁾

〈표 1〉 보험조사협의회의 구성

-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소속 공무원 1명
-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소속 공무원 1명
-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소속 공무원 1명
-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소속 공무원 1명
- 금융감독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
- 생명보험협회의 장, 손해보험협회의 장,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각 1명
- 보험사고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보험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 그 밖에 보험계약자·피보험자·이해관계인의 권익보호 또는 보험사고의 조사 등 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3) 참고로 보험안내자료에는 상품설명서, 상품요약서, 변액보험 운용설명서 등이 있음

〈주요 보험안내자료〉

안내 자료명	안내 내용
① 상품설명서	보험약관의 중요 내용 등을 반영한 대표 안내자료로 25페이지 안팎으로 구성
② 핵심상품설명서	상품설명서의 핵심 정보를 1페이지로 요약한 안내자료로 상품설명서 표지 앞장에 위치
③ 상품요약서	보험료 기초요율, 가입제한 기준 등 상품의 특이사항을 Q&A 형태 등으로 설명
④ 운용설명서	자산운용 실적에 따라 보험금이 변동되는 실적배당형 상품(변액보험 등)에 대해 펀드 운영 현황 등 상품구조를 설명

자료: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16. 12. 22), “소비자의 이해도 제고를 위한 보험안내자료 개선방안”

- 4) 금융위원회의 보험회사,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 대한 조사임
- 5) 보험업법 제163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 이 중 “보험사고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보험 관련 기관”에 대해 현행 보험업감독규정에서는 ① 국민건강보험공단, ② 국민연금관리공단, ③ 근로복지공단, ④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여기에 신용정보원을 추가하는 내용임
- 보험사기 방지 대책 수립 및 보험사기 조사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서는, 보험신용정보(보험계약 및 보험금 청구·지급 정보)를 집중관리·활용하는 신용정보원이 보험사고조사협의회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임

■ 보험설계사 등의 모집에 관한 경력(제9-4조의2)

- 보험설계사와 개인보험대리점이 보험사기행위 관련 사유로 업무정지 3개월 이상 자체 징계를 받은 이력을 보험협회가 수집·관리·제공할 수 있도록 함
 - 보험협회는 보험설계사 및 개인보험대리점의 모집에 관한 경력(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으로 한정함)의 수집·관리·제공에 관한 업무를 할 수 있음⁶⁾
 - 그에 따라 보험업감독규정에서는 보험협회가 수집·관리·제공할 수 있는 모집 경력의 종류와 내용을 정하고 있음

〈표 2〉 보험협회가 수집·관리·제공할 수 있는 보험설계사 및 개인보험대리점의 모집 경력

-
- 보험회사 등 소속별 보험설계사 등록기간
 - 모집한 보험계약의 건수
 - 보험업법에 따라 영업정지, 등록취소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이력
 - 보험계약이 체결된 후 3개월 이내에 보험약관 또는 청약서의 미교부, 청약서 자필서명 누락, 보험상품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보험계약이 해지된 건수, 3개월 이후에 기타 불완전판매 등으로 인하여 보험계약이 해지된 건수 및 보험계약 무효 건수
 - 수당환수 내역
 - 보증보험 가입 및 청구 유무
 - 감독원장이 정하는 산식에 따른 불완전판매비율 및 계약 유지율(원계약 기준)
 - 제4-5조에 따른 교육대상(집합교육 대상 여부를 포함한다) 및 이수내역
 - 위 각 사항을 고려하여 협회의 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우수 보험설계사 해당여부
-

- 보험설계사 등의 제재 이력과 관련하여 개정안에서는 보험업법에 따라 감독당국으로부터 받은 영업정지, 등록취소 또는 과태료 처분 외에도,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보험사기행위 관련 사유로 업무정지 3개월 이상 자체 징계를 받은 이력을 추가하는 내용임 **kiri**

6) 보험업법 제175조 제3항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 제5호의2